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4월 17일

나. 발 의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4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노상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통·반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제3항)

○ 반장 통신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임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
서 임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 등 지역 내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통·반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을, 안 제4항에서는 반장
에게 통신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현재 우리 구(區)의 통·반장 임명 현황을 살펴보면, 통장은 정원 591명 중 97.3%인 575명

이 위촉된 반면 반장은 정원 4,985명 중 54.9%인 2,736명만이 위촉되어 있음.

-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운용의 균형 확보를 위해 금액 기준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통·반장의 처우개선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시행하는 추세임.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 증부와 같은 환경적 변화를 계기로 통·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또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구성인원의 증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행정안내 사항의 신속한 전달 효과 및 다수의 주민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감염병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통신 요금이나 예방 접종을 지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여겨짐.
- 지원 사항으로는 예방 접종비는 예방 접종 무료 대상자(1960. 1. 1. 이전 출생자: 예방접종 무료 대상)를 제외한 모두에게 1인당 연 4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통신 요금은 반장 전원에게 1인당 연 50,000원을 지급할 예정으로써 예방 접종비에 39,880천원과 통신 요금에 149,550천원을 추산하여 총 189,430천원의 비용을 산출함.
- 다만, 반장 활동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책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지원책이 반장 제도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15 호
----------	---------

제출연월일: 2025. 4.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제3항)

나. 반장 통신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

- 개선의견: 안 제10조제3항 통·반장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 제시

- 수용여부: 수용

3) 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 3. 27.~4. 16./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과의 접촉을 수반하는 통·반장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편의 제공) ①·②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10조(편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구청장은 주민과의 접촉을 수반하는 통·반장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 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영등포구 반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확대되어 추가 세출 발생
- 안 제10조제3항 신설: 통·반장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사항
 - 안 제10조제4항 신설: 반장에 대한 통신비용 지원 사항

2. 비용추계 기준

- 지원대상: 영등포구 반장 전원 ※ '25. 3. 기준 현원: 2,736명
- 지원금액
 - 예방접종비: 1인당 연 40,000원(예방접종 무료 대상자 제외 전원 지급)
 - 통신요금: 1인당 연 50,000원(반장 전원 지급)

3.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합 계	189,430	
통신요금	149,550	50,000원(연간) × 4,985명(정원) × 60% = 149,550천원
예방접종비	39,880	40,000원(연간) × 4,985명(정원) × 20% = 39,880천원

- 통신요금: 반장 현 위축률(정원의 약 55%) 및 지원사항 확대에 따른 현원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원의 60% 산출
- 예방접종비: 반장 현원 중 1960. 1. 1. 이후 출생자 약 18% 추정,
현원 증가 및 생년월일 자료 오류 가능성 고려 정원의 20% 산출
※ 1960. 1. 1. 이전 출생자: 예방접종 무료 대상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						
	○						
	소계(a)						
세출	○통신요금	149,550	152,541	155,592	158,704	161,879	778,266
	○예방접종비	39,880	40,678	41,492	42,322	43,169	207,541
	소계(b)	189,430	193,219	197,084	201,026	205,048	985,807
□ 총 비용(a-b)		-189,430	-193,219	-197,084	-201,026	-205,048	-985,807

※ 반장 위축률 향상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 2차년도부터 상승률 2% 적용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구비)		189,430	193,219	197,084	201,026	205,048	985,807
합계		189,430	193,219	197,084	201,026	205,048	985,807

6. 추가의견: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동영
연 락 처	02-2670-3176